

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선산문화회관 내 정비·교체된 시설과 장비에 맞추어 조례를 현행화 하고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며
- 나.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·운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.
- 다.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의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신설(안 제5조의2)

나. 시설 및 장비 관련 조항 정비 및 사용료 부과기준 현실화(안 별표)

1) 종전 예식장 관련 사용료 삭제 및 소회의실 관련 사용료 신설

2) 대강당 시설의 이용시간 구분 추가 및 인상(1일 사용 신설)

가) 1일 (08:00 ~ 18:00) : 100,000원

나) 오전(08:00 ~ 12:00) : 40,000원 → 50,000원

다) 오후(13:00 ~ 17:00) : 50,000원 → 60,000원

라) 야간(18:00 ~ 22:00) : 60,000원 → 70,000원

3) 변경된 장비의 사용료 정비(영사기 → 프로젝터)

다.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3조)

라.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화(안 제13조)

마. 입장 제한대상을 쉽게 풀어쓰고 차별적 용어를 정비(안 제14조)

바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04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
2)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
3)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

4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없음.

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”를 “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사용에 관하여”를 “사용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구미시선산문화회관””을 “구미시선산문화회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동부리 487-1, 514-6, 698-5번지”를 “선산중앙로 117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사용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사용”이란”으로, “사무실등 부속시설”을 “사무실, 부속시설 등 회관 시설”로, “이용함”을 “이용하는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관람”이란 행사참여, 전시물관람 등 회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회관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소속”을 “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관람료등”을 “관람료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,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회관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 중 “사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사용하려는”으로, “수시로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”을 “시장에게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공공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

④ 사용의 허가는 접수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
2.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인 경우
3.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, “동시에 [별표1]에 의한 사용료(이하 “기본사용료”라 한다)전액”을 “동시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(이하 “기본사용료”라 한다) 전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연장사용하고자 할”을 “연장 사용하려는”으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, “이 때”를 “사용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본 사용료”를 “기본사용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의 경우에는 1일당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.

제8조제6항 중 “납부한다”를 “납부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사용허가시”를 “사용허가 시”로, “사항등”을 “사항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 관람료외”를 “다른 관람료 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기본 사용료”를 “기본사용료”로, “제8호제1항”을 “제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용허가시”를 “사용허가 시”로, “선납 하여야”를 “선납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발매하고

자 할 때에는 발매전”을 “발매하려는 때에는 발매 전”으로, “발매상황”을 “발매 상황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시가 직접 사용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,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반환되지”를 “반환하지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의 1에 해당 할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12조제4호,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사용허가후”를 “사용허가 후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회관시설관리상”을 “회관시설관리 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,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현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현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제한할”을 “제한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술에 취한 사람이나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
2.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
3. 회관시설 안의 행사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
4. 그 밖에 장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15조제1항 중 “사용기간중 회관내”를 “사용 기간 중 회관 내”로, “하고자 할때”를 “하려는 때”로, “안전대책등을”을 “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원상회복 하여야”를 “원상회복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한 설비의 설치허가 또는”을 “따라 설비의 설치를 허가하거나”로, “예탁토록하여”를 “예탁토록 하여”로,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양도등의 금지)”를 “(양도 등의 금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다음”을 “다른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표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시설사용료(제8조 관련)

시설명	사용단위	사용료	비고
대강당 (2층)	1일(08:00~18:00)	100,000원	○ 토요일 오후, 일요일, 공휴일은 20%를 가산한다. ○ 초과 시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25%를 가산한다. - 단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.
	오전(08:00~12:00)	50,000원	
	오후(13:00~17:00)	60,000원	
	야간(18:00~22:00)	70,000원	
소회의실 (1층)	1회(2시간 이내)	30,000원	
프로젝터 대여	1회(2시간 이내)	20,000원	○ 초과시는 1시간마다 10,000원을 가산한다.
조명시설 대여	1회(2시간 이내)	20,000원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</u>	<u>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선산문화회관의 설치 및 <u>사용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사용에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명칭) 명칭은 “구미시선산문화회관”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	제2조(명칭) ----- 구미시선산문화회관----- -----.
제3조(위치) 회관은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487-1, 514-6, 698-5번지에 둔다.	제3조(위치) ----- - <u>선산중앙로 117</u> ----- -----.
제4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 <u>사용</u> ”이라 함은 회관의 대강당, 소회의실, 사무실등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이용</u> 함을 말한다. 2. “ <u>관람</u> ”이라 함은 행사참여, 전시물관람등 회관시설의 <u>사용목적 이외에</u> 회관에 입장함을 말한다.	제4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 1. “ <u>사용</u> ”이란----- ----- <u>사무실, 부속시설 등 회관 시설</u> ----- ----- <u>이용하는 것</u> -----. 2. “ <u>관람</u> ”이란 행사참여, 전시물관람 등 회관 시설을 <u>사용하기 위하여</u> 회관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.
제5조(관리) ① 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실을 두고, <u>시소속</u> 공	제5조(관리) ① ----- ----- <u>구미시(이</u>

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를 담당하게 한다.

② 관리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2. (생략)

3. 회관의 사용료, 관람료등의 수납

4. 기타 회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

<신설>

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-----
-----.

② ----- 구미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-- 각호 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관람료 등 --

4. 그 밖에 -----

제5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,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·운영에

제6조(사용허가) ① (생략)

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회관시설의 일부를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 단체등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와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, 기타 공익을 위하여 긴급히

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회관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사용하려는----- 시장에게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-----.

③ 시장은 공공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

④ 사용의 허가는 접수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

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외에는 접수순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다.

제7조(사용의 불허가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3.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8조(사용료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[별표1]에 의한 사용료(이하 “기본사용료”라 한다) 전액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회관을 연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장허가 할 수 있으며, 이 때 퇴관시 초과 1시간마다 사용료의 4분의 1에 해당

다.

1.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
2.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인 경우
3.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사용의 불허가) -----
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-----

제8조(사용료) ① 제6조에 따른-----
----- 동
시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(이하
“기본사용료”라 한다) 전액---
-----.

② ----- 연장 사용하려는--

범위-----
---- 사용자는 -----

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
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④ (생략)

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에는 일당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.

⑥ 사용시간이 신청한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.

제9조(관람료) ① 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 행사의 내용, 관람료, 관람예정인원,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한 관람료외에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.

③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

-----.
-----.

③ ----- 기본사용료-----
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의 경우에는 1일당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.

⑥ -----

----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람료) ① -----

----- 사용허가 시 -----

사항 등-----
-----.

② -----
- 따른 관람료 외-----

-----.

③ -----

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
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. 다
만,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
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
다.

④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
사용허가시 기본사용료에 상당
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납
하여야 한다.

⑤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
에는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
받아야 하며, 발매가 완료되면
발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시
의 직접사용 또는 공익, 기타 특
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
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
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된 사
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. 다
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
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
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
환할 수 있다.

1. 제12조제4호, 제5호의 규정에

-----.
- 기본사용료-----
제8조제1항-----.

④ -----
사용허가 시 -----
----- 선납하
여야-----.

⑤ ----- 발매하려는 때에는
발매 전-----
----- 발
매 상황-----.
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시
가 직접 사용하거나 공익을 목
적으로 하는 경우, 그 밖에 특별
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
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
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
----- 반환하지 -----.
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할 -----

-----.

1. 제1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

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. 사용허가 신청자가 <u>사용허가</u> 후 변경사유발생즉시 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시장이 허가 취소하였을 때 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) 시장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<u>회관시설관리상</u>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5. <u>기타</u>,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 <u>사용자는 회관시설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사용자가 회관의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하였거나,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대로 복구하여</u>	<u>호의 규정에 따라</u> ----- ----- 2.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 3. ----- <u>사용허가</u> 후 ----- ----- ----- 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)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회관시설관리 상</u> ----- ----- 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제13조(사용자의 손해배상) <u><삭 제></u> ② <u>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현시</u>
--	---

야 한다. 다만,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, 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.

제14조(입장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위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음주만취자, 전염병환자, 기타 미관상 혐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
2. 공안상 위해 우려가 있는 자
3. 회관시설안의 행사나 비품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
4. 기타 장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

제15조(사용자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회관내에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미리 그 설비의 개

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현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.

제14조(입장의 제한) -----
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----- 제한할-----
-----.

1. 술에 취한 사람이나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
2.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
3. 회관시설 안의 행사나 비품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
4. 그 밖에 장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15조(사용자의 설비) ① -----
-- 사용 기간 중 회관 내-----
----- 하려는 때-----

요, 내용, <u>안전대책등을</u> 시장에 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 다. ② (생 략)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 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 상회복 하여야 한다.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설비 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그 철 거 및 원상회복 비용에 상당하 는 예치금을 <u>예탁토록하여</u>, 사 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무 불이행시 시장이 이를 대행 하고 그 비용은 예치금으로 충 당한다. 제16조(<u>양도등의 금지</u>) 이 조례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권리를 <u>다음</u> 사람에 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.	----- <u>안전대책 등을 포함</u> <u>하여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따</u> <u>라</u>-- ----- ----- ----- <u>원</u> <u>상회복하여야</u>- ----. ④ ----- <u>따</u> <u>라 설비의 설치를 허가하거나</u> - ----- ----- ----- <u>예탁토록 하여</u>----- ----- <u>다른</u> ----- -----. 제16조(<u>양도 등의 금지</u>) ----- ----- <u>따라</u>-- ----- ----- ----- <u>다른</u> ----- -----.
--	--

별표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1]				■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[별표]			
<u>시설사용료</u>				<u>시설사용료</u> (제8조 관련)			
시설명	단위	사용료	비고	시설명	사용단위	사용료	비고
대강당 (2층)	08:00~12:00	40,000원	○ 토요일 오후, 일요일, 공휴일은 20%를 가산한다. ○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90,000원으로 한다	대강당 (2층)	1일 (08:00~18:00)	100,000원	○ 토요일 오후, 일요일, 공휴일은 20%를 가산한다. ○ 초과 시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25%를 가산한다. 단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.
	13:00~17:00	50,000원			오전(08:00~12:00)	50,000원	
	18:00~22:00	60,000원			오후(13:00~17:00)	60,000원	
예식장 (2층)	1회 (2시간 이내)	30,000원	○ 토요일 오후, 일요일, 공휴일은 20%를 가산한다. ○ 예식장으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대강당의 50%로 한다.		야간(18:00~22:00)	70,000원	
영사기 대여	1회 (2시간 이내)	20,000원	○ 초과시는 1시간 당 10,000원을 가산한다.	소회의실 (1층)	1회 (2시간 이내)	30,000원	
조명시설 대여	1회 (2시간 이내)	20,000원	○ 초과시는 1시간 당 10,000원을 가산한다.	프로젝터 대여	1회 (2시간 이내)	20,000원	○ 초과시는 1시간마다 10,000원을 가산한다.
				조명시설대 여	1회 (2시간 이내)	20,000원	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생략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생략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 <개정 2012.3.21.>

② ~ ③ 생략

제144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생략

□ 「도로명주소법」

제19조(도로명주소 등의 효력)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. <단서 생략>

② ~ ④ 생략

[전문개정 2011.8.4.]

□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1.18., 2013.3.22., 2014.3.18.>

1. "감염병"이란 제1군감염병, 제2군감염병, 제3군감염병, 제4군감염병, 제5군감염병, 지정감염병,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, 생물테러감염병, 성매개감염병, 인수(人獸)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.

2. ~ 19. 생략

[시행일 : 2014.9.19.] 제2조

□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~ ④ 생략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